

의안번호	2201238
의 퇴 인	서왕진 의원
회 답 일	2024. 7. 3.
추계번호	24C1494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	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¹⁾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원은 없음
 -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대상 프로그램과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 기관)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3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